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강선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2021-84 번호

발의연월일: 2021년 8월 13일

발 의 자: 강선영, 송순효, 신낙형, 김동협, 김현희, 이충현, 윤유선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사항을 바로잡고 아동위원의 임무 및 자격,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하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 개정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목적 및 근거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. (안 제1조)
- 나. 용어의 정의를 입법형식에 맞게 개정함. (안 제2조)
- 다. 상위법에 맞게 아동위원의 임무를 추가함. (안 제3조)
- 라. 아동위원의 정수를 동별 여건에 맞춰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함. (안 제4조)
- 마. 아동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그 자격요건을 강화함. (안 제5조)
- 바. 협의회의 기능을 일부 개정함. (안 제8조)
- 사. 임시회의의 소집요건을 추가함. (안 제9조)
- 아. 조직개편에 따른 협의회 간사 담당팀장 개정. (안 제11조)
- 자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아동복지법」제14조

나. 협조부서: 아동청소년과

다. 입법예고: 2021. 8. 17. ~ 8. 22. 결과: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아동복지법」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아동 위원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설치,"를 "「아동복지법」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과 아동위원협의회를 두고, 이를 효율적 으로"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위원"은 지역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중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 각 동의 아동위원을 말한다.
- 2. "협의회"는 지역 내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및 관심사항을 토의하기 위하여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협

의회를 말한다.

제3조제2호 중 "아동복지에 관하여"를 "아동복지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3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전담공무원,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원의 수는 동별 2명으로 하되, 50명의 범위에서 인구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명까지 위촉 할 수 있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"당해"를 "해당"으로, 같은 호 부터 제3호까지 중 "자"를 각각 "사람"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교육청, 경찰서, 관내 학교, 사회복지시설, 아동 육성보호 및 관련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

제5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2항) 제4호 중 "기타"를 "그 밖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.
- 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- 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

- 3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4.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제6조 본문 중 "65세"를 "만 65세"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"잔여기간"을 "남은기간"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본문 중 "1회에 한하여"를 "한 차례만"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잔여기간"을 "남은기간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궐위되거나사고로 인하여"를 "부득이한 사유로"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, 제4호 및 같은 조제2항 중 "아동위원"을 각각 "위원"으로 한다.

1. 위원의 임무수행과 활동 지원

제9조제2항 중 "인정하는"을 "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

하는"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"아동청소년관련 담당주사가"를 "소관업무 담당팀장이"로 한다. 제12조 본문 중 "범위안에서 여비, 기타"를 "범위에서 여비, 그 밖의"로 한다. 제13조 중 "관하여 필요한"을 "필요한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동복 | 제1조(목적) ------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,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① "위원"은 지역내 아동의 생 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 을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중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 각 동의 아동위원을 말한다.

② "협의회"는 지역 내 아동복 지에 관한 조치 및 관심사항을 토의하기 위하여 각 동의 아동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 다.

제3조(위원의 임무) 위원의 임무 제3조(위원의 임무) -----

개 정 안

「아동복 지법 _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 서울특별시강서구아동위원협의 | 시 강서구 아동위원과 아동위원 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설 | 협의회를 두고, 이를 효율적으 로 -----
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위원"은 지역내 아동의 생 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 을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중 관할 동장의 추천 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 각 동의 아동위원을 말한다.
- 2. "협의회"는 지역 내 아동복지 에 관한 조치 및 관심사항을 토의하기 위하여 각 동의 아 동위원으로 구성된 서울특별 시 강서구 아동위원협의회를 말하다.

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(생략)
- 2. <u>아동복지에 관하여</u> 필요한 지원·지도

<신 설>

3. (생략)

제4조(위원의 정수) 위원의 정수 는 동 단위 2명으로 하되, 인구 3만 이상의 동은 3명으로 한다.

- 제5조(위원의 위·해촉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.
 -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
 - 2.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- 3.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 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<u>자</u> <신 설>

1. (현행과 같음)
2. <u>아동복지에</u>
3. 전담공무원, 민간전문인력 및
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
<u>4</u> . (현행 제3호와 같음)
제4조(위원의 정수) <u>위원의 수는</u>
동별 2명으로 하되, 50명의 범위
에서 인구 및 지역의 특수성을
고려하여 3명까지 위촉 할 수
있다.
 제5조(위원의 위·해촉) ①
1. 해당
사람
2
사람
3
사람
4. 교육청, 경찰서, 관내 학교,
사회복지시설, 아동 육성보호

<u><신 설></u>

및 관련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

-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.
- 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 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
 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
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
 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
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3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있는 사람
- 4.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
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
 특례법」 제2조의 성폭력범죄
 또는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
 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
 아동・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
 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
 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
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
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
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

-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- 1. ~ 3. (생략)
- 4. 질병 또는 <u>기타</u>의 사유로 임 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- 제6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65세가 되는 해 의 12월 말일까지 재임할 수 있 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구성) ① (생 략)

- ②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 각 2년으로 하며, <u>1회에 한하여</u> 연임할 수 있다.다만,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<u>잔여기간</u>으로 한다.
- ③ (생 략)
-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

한다)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
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
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<u>③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4 그 밖
제6조(위원의 임기)
<u>만 65세</u>
<u>남은기간</u>
제7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
<u>한 차례만</u>
<u>남은기간</u>
③ (현행과 같음)
4
부득이한 사유로

<u>여</u>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기능)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
- 2. (생략)
- 3. <u>아동위원</u>의 임무에 관한 연 구
- 4. 그 밖에 <u>아동위원</u>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처리
- ② 협의회는 <u>아동위원</u>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 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. 제9조(회의) ① (생 략)
 -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상·하반기에 각각 1회를 소집하며,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
③ (생 략) 제11조(간사) ① (생 략)

② 협의회의 간사는 <u>아동청소년</u> ② --

 제8조(기능) ①
· 1. 위원의 임무수행과 활동 지원
2. (현행과 같음) 3. <u>위원</u>
4 <u>위원</u>
② <u>위원</u>
 제9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
②
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
이상이 요구하는
③ (현행과 같음) 제11조(간사) ① (현행과 같음)

---- 소관업무 담

관련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당팀장이 ------담당직원이 된다. 제12조(수당 등) 협의회의 위원은 제12조(수당 등) -----명예직으로 하되, 협의회에 참 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, 기타 필요한 범위에서 여비, 그 밖의 ----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.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 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. 제13조(운영규정) -----제13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 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필요한 -----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참고 관계 법령

□ 「아동복지법」

제14조(아동위원) ① 시·군·구에 아동위원을 둔다.

-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,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29.>
-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.
-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・군・구의 조례로 정한다.